

충청북도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안

제안년월일 : 2003. 5. 20

제 안 자 : 김문천의원

1. 수정이유

-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할 수 있는 공공시설의 적용범위가 용어의 중복 사용과 구체적인 기관의 명칭이 표시되지 않아 그 대상을 쉽게 인지 할 수 없는바, 이를 명확·간결히 하고자 하며(안 제3조)
- 사업자의 의무사항과 부정한 방법에 의한 계약해지 사유 등을 효과적으로 지도 감독하고 검증하기 수월하도록 하기 위하여 허가기간을 단축하며(안 제5조 2항)
- 동 조례안의 규정에 위반한 자가 다시 허가신청을 할 경우에 제재 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바, 이를 해지일 이후부터 다시 신청할 수 없도록 새로운 항을 신설하고자(안 제7조)
- 부칙의 내용을 시행일과 경과조치로 구분하여 기득권의 권리자를 명확히 보호하고자 하며(부칙)
- 기타 대리인에게 운영권을 위탁 할 수 있는 대상의 자구를 일부 수정 보완하여 그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자 함.(안 제6조 제2항)

나. 수정 주요골자

- 안 제2조 제1항 중
 - 제1호 “도 및 소속기관의 청사”를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에 의한 도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로 하고

- 제2호 “도 및 소속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를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로 하며
 - 제3호 “도의 지방공기업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를 “기타 충청북도가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로 한다.
- 안 제5조 제2항 중
- “3년”를 “2년”으로 하고
- 안 제6조 제2항 중
-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배우자 및 동일한 조건의 직계존·비속”으로 한다.
- 안 제7조에 제③항을 신설하여
-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그 해지일 이후 배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신청을 할 수 없다.”를 삽입하며
- 부칙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미 계약된 배점 및 자동판매기의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하여 허가된 것으로 본다.”를
 - “제1항(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와 “제2항(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종전의 규정에 의거 설치 및 계약된 배점 및 자동판매기는 이 조례에 의하여 허가된 것으로 보며, 그 계약기간은 만료일까지 유효한 것으로 본다”로 한다.

충청북도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안

충청북도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에관한조례안 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안 제2조 제1항중

- 제1호 “도 및 소속기관의 청사”를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에 의한 도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로 하고
- 제2호 “도 및 소속기관이 직접관리하는 공공시설”를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로 하며
- 제3호 “도의 지방공기업이 직접관리하는 공공시설”를 “기타 충청북도가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로 한다.

○ 안 제5조 제2항 중

- “3년”을 “2년”으로 하고

○ 안 제6조 제2항 중

-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배우자 및 동일한 조건의 직계존·비속”으로 한다.

○ 안 제7조에 제③항을 신설하여

-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그 해지일 이후 매점 및 자동판매기설치 신청을 할 수 없다.”를 삽입하며

○ 부칙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미 계약된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하여 허가된 것으로 본다.”를
- “제1항(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와 “제2항(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종전의 규정에 의거 설치 및 계약된 매점 및 자동판매기는 이 조례에 의하여 허가된 것으로 보며, 그 계약기간은 만료일까지 유효한 것으로 본다”로 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제정안	수정안
제2조(책임의 범위) ① 이 조례의 적용대상 공공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제2조(책임의 범위) ①----- -----
1. 도 및 소속기관의 청사 2. 도 및 소속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 3. 도의 지방공기업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	1.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의한 도본청 및 직속 기관, 사업소 2. 지방 광역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 3. 기타 충청북도가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
제5조(우선히가 및 계약기간) ① 설치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을 때에는 일반인에 우선하여 장애인 등에게 허가하여야 한다. ② 2인 이상이 신청한 경우의 우선순위는 별표와 같으며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제5조(우선히가 및 계약기간) ① (제정안과 같음) ② ----- ----- 2년 -----
제6조(사업자의 의무) ① 매점 또는 자동판매기의 운영권을 허가받은 장애인 등은 적절 그 사업에 종사하여야 하며, 다른 사람에게 전매하거나 양도 할 수 없다. ②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관련 장애등급 2급 이상인자와 정신지체장애인은 사전에 설치자와 승인을 얻어 대리인(주민등록상 같이 거주 및 실제로 같이 살고 있는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에 한한다)에게 그 운영권을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사업자의 의무) (제정안과 같음) ② ----- ----- (----- 배우자 및 동일한 조건의 직계존·비속 -----)
제7조(계약해지) 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용자가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② 계약해지 사용 발생 시 계약체결 자에 대해 최소 1월전에 소명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7조(계약해지) ①(제정안과 같음) ②(제정안과 같음)
(신설)	③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그 해지일 이후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신청을 할 수 없다.
부 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미 계약된 제 1 및 자동판매기의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하여 허가될 것으로 본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종전의 규정에 의거 설치 및 계약된 매점 및 자동판매기는 이 조례에 의하여 허가될 것으로 보면, 그 계약기간은 만료일 까지 유효한 것으로 본다.